

식품회수(Recall)제도 도입에 따른 식품업체의 대응방안

유 화 춘 /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식품위생연구부

I. 서 론

시중에 유통중인 불량식품을 회수, 폐기 처분하는 식품회수제도가 금년 9월 30일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며, 이 제도는 미국, 호주, 유럽등의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하여 시행됨에 따라 식품업체에 대단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이 단일화 되어 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적 규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 주권 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있으며 각종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적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즉 식품회수제도의 도입은 생산 위주의 기업 경영에서 이제는 소비자를 우선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하여 한정된 처벌에서 관련 제품 전체를 책임지는 무한 책임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식품회수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식품위생법등에 마련된 식품회수제도에

대한 규정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어질 식품회수제도의 방향을 알아보고 이에 대비하여 식품업체가 준비하여야 될 사항들을 알아본다.

II. 식품회수제도의 도입배경과 추진상황

정부는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식품행정 쇄신대책으로 종전의 사전통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종전의 사전관리와는 달리 사후관리는 기업 스스로 자사 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위해식품을 자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같이 사후관리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식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위해식품으로 판명되었을 때 생산자, 유통자 등의 영업자가 문제식품을 자발적으로 회수 폐기하여 소비자를 위해식품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존의 압류, 폐기의 제재보다

효과적인 소비자의 보호수단이 되고 있는 회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더우기 제조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만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제조물 책임법(PL법: Product Liability)의 도입이 강도높게 거론되고 있어 기업은 이제는 스스로 자사상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등 품질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회수(Recall)제도와 PL제도는 두제도 모두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나 회수제도는 결함있는 물건을 전량 수거해 보상·수리·교환해 주는 『사전적 피해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 반해 PL제도는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 배상해 주는 『사후적 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는 1995년 12월 말에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 위해물품에 대한 결함 시정제도(소위 리콜제도)의 운영절차를 마련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식품을 포함하여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 완구등 모든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비자보호법에 위해방지 기준 위반물품 또는 위해물품에 대해 사업자가 해당 주무장관에게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함을 시정한 후에는 그 결과를 주무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즉 각 위반제품은 해당 주무관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식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식품의 회수를 시행하는 주무관청이 되며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하에 식품회수를 운영하게 된다.

식품회수(Recall)제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위해식품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미 모두 인지도한 바와 같이 1995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위해식품에 대한 자진회수제도와 강제회수제도 및 공표규정이 마련되었다. 즉 식품위생법 개정법 제31조의2(식품등의 자진회수)를 신설하여 위해식품의 자진회수를 규정하였고, 기존의 제56조(폐기처분등)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6조의 2(공표)에서는 영업자가 위해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회수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1994년 12월 19일 한국식품공업협회 주최로 식품회수제도 심포지움을 가졌으며, 한국식품위생연구원에서는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으로서 『Recall(회수)제도 도입을 위한 유통단계별 식품의 위해물질 동정 및 평가연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미국의 회수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연구부의 식품정책연구팀은 미국 워싱턴의 FDA 본부와 USDA본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FDA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였다. 또한 금년 4월 4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식품회수제도에 대한 시행방안을 갖고 한국식품위생연구원에서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 시행방안은 금년 7월에 식품동회수제도운영규칙(안)으로 이미 입법예고되었고, 관련부처와 시·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예고안을 확정하여 공표한 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금년 9월 30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II. 우리나라 식품회수정책 개요

작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영업자 자진회수제도와 강제회수제도 및 공표규정이 마련되었고, 금년 6월 동법시행령에 공표방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위생법의 개정과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령에서 위임된 식품등의 회수와 공표에 관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식품동회수제도운영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식품동회수제도운영규칙(안)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질 회수제도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에 규정하여 금년 9월 30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식품등회수제도운영규칙(안)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전개되어질 식품회수제도의 개요와 방향을 정리해본다.

1. 회수형태

가. 식품등의 자진회수(식품위생법 제31조의2)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위해를 발견하여 영업자 스스로 실시하는 회수로서 자진회수절차를 따른다.

나. 식품등의 강제회수(식품위생법 제56조제3항)

회수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영업자가 자진회수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식품위해평가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회수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영업자가 회수에 대한 명을 받고 자진회수 절차에 따라 영업자 스스로 실시하는 회수

2. 자진회수책임 구분

식품 위해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진회수책임은 영업자중 위해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며, 영업자간에 책임문제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회수담당관이 조사후 결정한다.

3. 식품회수대상

식품회수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체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등으로 한다.

가. 관련 식품위생법 조항

1)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3.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2) 제5조(병육등의 판매등 금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은 이를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3) 제6조(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등 금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7조(기준과 규격)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

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5) 제8조(유독기구등의 판매·사용금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열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6) 제9조(기준과 규격)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나. 식품회수대상범위

- 1) 위해식품 및 위해식품첨가물
- 2) 위해를 줄 수 있는 병육과 그 부산물
- 3)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식품
- 4) 유독기구 및 용기·포장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기구와 용기·포장

4. 식품회수상황의 분류

가. 식품회수상황

식품등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행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식품회수상황의 분류

“긴급상황”과 “일반상황”으로 분류하되 다음의 기준으로 분류한다.

- 1) 긴급상황
식품등에 병원미생물, 유독·유해물질이 들

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때를 말한다. 긴급상황인 경우에는 지방회수담당관이 즉시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일반상황

긴급상황이 아닌 회수상황으로서 식품등의 소비나 사용으로 건강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상황인 경우에는 지방회수담당관이 회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회수공표

가. 회수공표

식품위생상의 위해발생 사실의 공표를 명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식품등의 회수광고를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나. 공표내용

회수공표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식품회수”표제
- 2) 제품명
- 3)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간
- 4) 회수사유
- 5) 회수방법
- 6) 회수회사명칭
- 7) 회수와 관련된 문의처의 전화번호 및 주소등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세부공표방법

1) 회수공표문의 표제 : 긴급상황인 경우 “긴급 식품회수”, 일반상황인 경우에는 “일반식품회수”라 표시한다.

2) 회수공표문의 크기 : 5단 1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가장자리는 대각선으로 빗금친 것으로 테두리를 둘러야 한다.

3) 회수공표문의 위치 : 발행되는 중앙일간지의 5면이내에 게재하여야 한다.

6. 식품회수담당관

식품회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 “중앙회수담당관”을 두며, 시·도, 시·군·구 및 식품의약품지방청에 “지방회수담당관”을 둔다.

가. 지방회수담당관

지방회수담당관은 관할지역의 식품등 회수에 관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제회수명령에 관한 사항 : 회수상황이 인지되어 지방회수담당관이 회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긴급상황인 경우에는 식품회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다.
- 2) 회수공표명령을 내린다.
- 3) 영업자의 회수계획 및 회수결과에 대한 평가
- 4)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 5) 회수된 제품의 폐기등 지도·감독

또한 지방회수담당관은 회수기간동안 영업자가 실시하는 회수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된 식품등의 수거검사, 중앙회수담당관에 보고, 타기관 협조요청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중앙회수담당관

중앙회수담당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영업자의 회수계획 및 회수결과에 대한 평가
- 2)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분석
- 3) 위원회에 심의안건 제출과 위원회의 운영지원
- 4) 지방회수담당관에 대한 업무 지휘

7. 식품회수평가위원회

가.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구성

식품등의 회수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식품회수평가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의사, 수의사, 법조인 및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이 위촉하여 이루어진다.

나. 식품회수평가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회수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위해정보 분석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기타 중앙회수담당관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라.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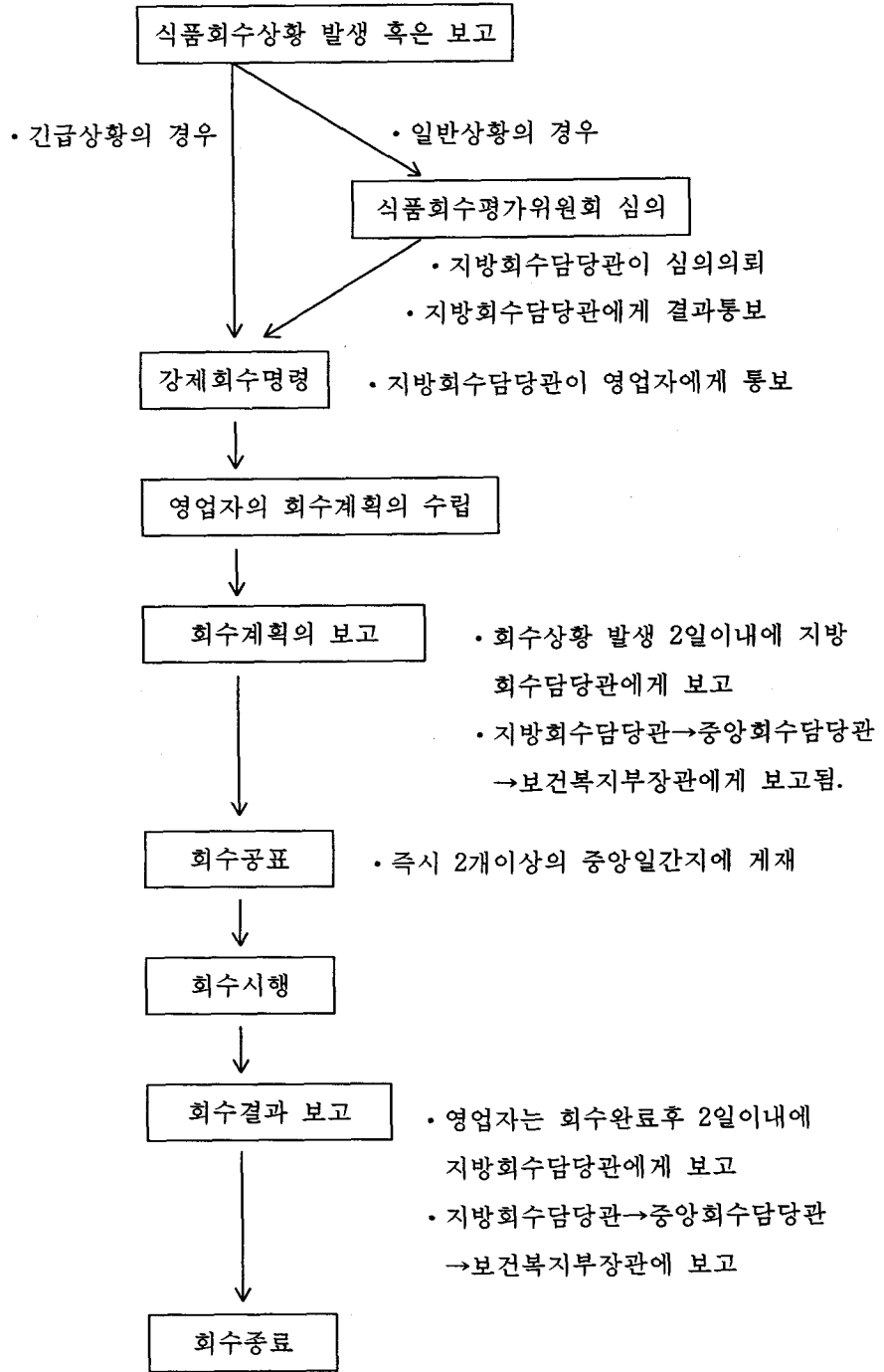
식품회수평가위원회는 회수심의안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간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IV. 회수제도 도입에 따른

식품업계의 준비와 대책

회수제도 도입에 따라 식품제조업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회수절차와 이에 따른 영업자의 임무를 알아보고, 회수시행을 앞두고 식품업체에서 이에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며 식품제조업내의 각 부서별로 회수에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지를 알아본다.

1. 식품회수절차



2. 회수시행시 영업자의 임무

자진회수와 강제회수의 회수절차는 기본적으로 같으며, 위 회수절차에 따라 영업자가 시행하여야 할 임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회수전담팀의 운영

영업자는 회수상황발생시 회수전반에 관하여 운영할 수 있는 회수전담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회수전담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회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회수사실의 공표
- 3) 회수실적 등의 평가
- 4) 회수계획, 회수결과 보고
- 5) 위해 발생요인 분석등

나. 회수계획의 수립

회수상황 발생시 회수대상식품의 유통을 즉시 중지시키고 회수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수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회수대상식품등의 제품명, 제조·가공업소명(수입제품인 경우는 식품등 수입판매업소 포함), 판매경로, 판매량등
- 2) 회수사유
- 3) 회수공표문
- 4) 회수공표방법
- 5) 회수방법 및 기간
- 6) 기타 회수와 관련된 사항

다. 회수계획의 보고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상황 발생 2일 이내에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회수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회수담당관은 이를 중앙회수담당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회수의 실시

1) 회수계획의 보고와 동시에 회수대상자들에게 회수계획 및 회수문을 통지한다.

2) 회수상황 발생후 2일 이내에 2개이상 중앙일간지에 회수공표문을 게재하고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문을 발송한다.

3) 회수대상식품의 더 이상의 유통을 즉시 막고, 회수대상식품의 롯데와 코드를 정확히 인식하여 회수를 실시한다.

4) 회수된 제품에 대한 재가공 또는 폐기 등의 최종처분을 결정하여 실시하여 회수된 제품이 다시 시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한다.

마. 회수의 평가

영업자는 회수를 종료한 후 유통량 대비 회수실적등을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회수결과의 보고

영업자는 회수가 완료된 후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회수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지방회수담당관은 중앙회수담당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회수공표문(회수공표문이 게재된 중앙일간지 첨부)
- 2) 회수실적등의 평가결과(회수량, 이미 소비된 량, 미회수량등)
- 3)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 4)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5) 기타 회수와 관련된 사항

3. 회수제도 도입에 따른 식품업계의 준비사항

영업자는 자사제품의 잠재적인 위해를 조사하고 제품회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사제품에 알맞은 회수절차를 준비하고, 회수발생시 즉각적으로 가동하여 회수를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회수전담팀을 두는 등의 회수에 대비한 사전계획을 세워 큰 혼란과 많은 어려움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영업자는 회수를 시행하는데 있어 항상 자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언제나 자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회수는 때로 위해와 관련된 불리한 언론공표과정에서 회사의 영업과 운영에 파산을 가져올 정도의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 스스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회사의 이익에 역효과를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사가 미리 취할 수 있는 준비사항과 회수운영에 있어 여러 사안들을 살펴본다.

가. 회수전담팀

1) 회수전담팀의구성

식품업계는 접수되는 자사제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회수상황을 판단하고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회사내 식품회수 전담팀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회수전담팀중 한 사람은 회사내 회수담당관으로서 모든 회수와 이에 관련된 활동을 준비하고 감독하도록 임명한다. 회수전담팀의 다른 팀원들은 잔류물질평가, 구매, 생산, 경영, 판매, 유통, 법, 그리고 소비자관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식품회수전담팀의 역할

식품회수전담팀은 회수상황 발생시 식품회수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회수담당관에 회수시행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며, 회수를 진행시키며 회수종료에 대한 보고를 하며, 시행한 회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언론에 공표를 하며 기타 회수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회수에 대비하여 제품명, 제조번호, 판매경로, 유통량등의 영업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보관하도록 한다.

3) 회수전담팀 구성원의 역할

- 잔류물질평가에 대한 지식이 많은 팀원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중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 가능하다면 해결책을 권고하도록 한다.
- 구매, 판매, 유통관계 팀원들은 회수대상식품이 위치해 있는 곳을 정확히 결정하기 위하여 회수대상식품의 제품코드와 롯데등을 정확히 인식하도록 한다.

- 법관계의 팀원은 취해진 결정과 조치가 법적 의무를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여 회수프로그램의 초안을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한다.
- 소비자관계 팀원의 일차적인 기능은 회사의 뉴스매체와 소비자에 대한 보도가 실제적이 되도록 하며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또한 언론과 매체에 의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관계담당자를 두어 회사의 모든 보도내용이 정확하고 단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회수담당관은 모든 회수활동을 관리하며 모든 회수상황을 총괄적인 책임을 갖는 회사의 주요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나. 기록유지와 제품의 코드화

정확한 기록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해식품을 정확하게 식별해 내는 것은 제품의 회수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기록유지의 기본목적은 회사가 위해성분과 제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장소를 파악하며 분리하여 제거하도록 하는데 있다. 만약 제조업자가 일반제품에서 위해제품을 분리할 수 없다면 훨씬 더 많은 제품을 회수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품에 대한 롯데와 코드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회수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회사는 입수되는 재료들과 나가는 완제품에 대한 유통경로와 가공을 쉽게 보여주는 기록들을 만들고 기록유지하도록 한다. 기록은 다음의 질문사항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여야 한다 :

- 1) 공장은 어떤 재료의 롯데를 언제 받는가?
- 2) 누가 재료를 생산하였는가?
- 3) 재료가 언제 처음에 생산되었는가?
- 4) 재료를 언제 모두 다 사용하였는가?
- 5) 재료는 어떤제품에 들어갔는가?
- 6) 재료는 어떤 공정을 받는가?
- 7) 완제품의 어떤 Lot이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가?
- 8) 완제품이 어디에 유통되었는가?

제품의 유통을 추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과 코드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제품, 벡취, 기간, 날짜(년/월/일), 공장을 표시해주는 선적용기와 제품용기에 명료한 인식코드

2) 특별한 롯트를 알아내는데 도와줄 Case의 계속적인 번호매김

3) 벡취코드 혹은 제조년월일 코드하에 포장된 총 Case에 대한 기록

4) 사용된 코드, 선적된 각 제품 Case의 번호와 수납장소에서의 기록

제품의 어떤 특별한 롯트내의 위해성분의 존재를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과 코딩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입수재료의 각 롯트를 인식하도록 한다 ; 입수된 날짜, 공급자의 이름, 량, 사용 날짜등을 기록한다.

2) 목록에 있는 물품의 통제번호 혹은 각 재료의 다른 인식을 보일 수 있는 벡취기록 또는 시간기록 시스템 ; 재료의 가공이 시작되고 완성된 시간 ; 가공조건 ; 장비의 유형과 번호 ; 재료를 사용한 완제품의 인식 ; 완제품의 량 ; 포장물질의 종류

이러한 기록들은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제품이 시장으로 출하되는 것을 보장하도록 오랫동안 보유되도록 한다. 또한 식품제조업체는 식품등의 위생상 위해요인 발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품 품목별 다음의 서류들을 최종기재일로 부터 2년간 유지하고 보관하도록 한다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 판매에 관한 일체서류(유통거래처, 판매일자, 판매량, 판매금액등), 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수입승인서·선적서·사용등에 대한 원료수불관련서류의 사본과 판매관련 기록, 기타 식품자진회수에 필요한 서류일체. 다만,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등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제품생산량, 제조번호, 제조단위등)는 3년간 보관한다.

다. 위해정보분석에 따른 문제의 인식과 확인

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위해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위해정보수집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식품감시원이 활동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해당 지방회수담당관에게 보고되며 위해가 확인되면 회수회사는 회수명령을 받게된다. 그러면 회수회사는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해당자료를 분석하여 제품이 위해문제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제품을 회수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때로는 회수회사는 자체내의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자진회수를 실시할 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사제품에 위해가 존재한다고 제시한 기관들에 의해 제시된 자료를 검토하여 위해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확인실험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과학적으로 위해요인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업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확인절차에서 문제가 존재한다고 확인되면 회사는 회수를 시작할 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품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침과 조치수준을 확실히 인식하고, 회수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회수절차를 가동하여야 한다.

라. 회수계획과 절차

각 회사는 의심되는 위해사건에서의 절차와 회수되는 제품을 위한 일괄적인 절차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 놓고 있어야 한다. 회수전담반의 각 회수담당자들은 회수계획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는데 참여하여야 하며 회수관리측면에서 주의깊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일단 회수계획에 대한 기본구조와 작업절차가 확립되면 회수전담팀은 이 계획이 현행의 회사정책에 따르는 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 실제 회수 후에 회수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제품회수를 위한 사전계획은 절대요건이다. 일단 계획이 개발되면 잘 작동되는 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습을 해 보아야 한다. 계획에 있는 절차는 이 절차가 효과적인가 그리고 날짜를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마. 회수시행

만약 회사가 제품회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게 된다면, 다음의 단계가 취해져야 한다.

1) 해당 지방회수담당관에 회수의 사유와 범위를 통고하고, 회수상황 발생 2일 이내에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한다.

2) 회수상황 발생 후 2일 이내에 2개이상 중앙일간지에 회수공표문을 게재한다. 회수공표문은 법에서 제시한 항목과 방법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한다.

3) 회수를 시작하고 시행하는 것을 돕는 모든 종업원에게 작업지시를 알리고 지시를 내린다.

4) 언론으로부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한다. 간략하고 실제적이며 정확한 소견을 준비한다. 큰 혼란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어떻게 질문이 처리되고 누구에 의해 처리되는지를 명시한다. 특별히 해당제품, 롯데와 코드를 정확히 인지하여 해당회사에서 제조된 다른 제품이 연루되거나 회수되지 않도록 한다.

5) 해당롯데의 회수제품이 더 이상 선적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는다.

6) 회사에서 직접 제품을 받은 고객과 가능하다면 이들로부터 다시 제품을 거래한 고객이나 소비자에게도 회수통고문을 발송하여 통고함으로써 회수를 시작한다. 특별히 해당되는 제품, 롯데와 코드를 정확히 인식하여 실시한다. 회사에서 직접 해당 제품을 받은 고객이 다시 해당제품을 판매했는지 또는 제품을 더 유통시켰는지를 확실히 파악한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내어 회수사실을 알도록 통고한다.

7) 소매유통에서 제품의 회수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한다.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회수된 모든 제품과 일부 창고에서 반납된 모든 제품을 모아두거

나 제품을 폐기하는데 있어 그 방법을 지시한다.

8) 회수를 하는 동안에 시간과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건기록을 유지한다.

9) 회수된 제품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회수제품이 적절하게 재조정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수제품의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바. 소매수준에서의 회수시행

제조사의 회수전담팀은 소매점과 회수되는 제품을 공급하는 유통센터에 통고하여야 한다. 통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제품을 이름, 중량, 선적분, 가능하다면 코드로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한다.

2) 얼마나 많은 제품이 저장고에 혹은 유통센터에 있는지를 확인한다.

3) 제품을 어떻게 폐기시킬 것인가에 대해 매니저에 지시한다.

4) 소매점 혹은 유통센터에서의 회수제품의 수, 제품이 안전하게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분되어지는지에 대하여 매니저에게 회수팀에 통고하도록 지시한다.

5) 소비자 반환금에 대한 절차에 대해 소매점의 매니저에 지시한다.

회수가 소매 혹은 소비자 수준에 미칠 때 소매시장에서 제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조자는 소매상인들에게 회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소매수준에서의 회수는 본질적으로 제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발견하고, 제품을 갖고 있는 소매점에 통고하며, 제조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제품을 처분하거나 저장하는 과정이다.

소매점들은 회수회사로부터 저장 장소를 통고받거나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또한 회수된 제품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제조원으로부터 혹은 회수통고에서 확실히 하도록 한다. 제조자의 특별한 취급지시사항이 없다면 소매점들은 제품을 선반에서 제거하고 이미 지명된 회수지역에 제품을 저장하도록 한다.

각 소매점은 회수회사의 지시사항에 따라 회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소매점은 회수통

고에서 지시받은대로 제품을 분리, 저장, 처분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소매점은 회수통고에서 인지된 롯데와 코드에 의해 지적된 제품만을 빼내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가능하지 않다면 소매점은 통고에서 전하는 모든 제품을 빼내어 분리하여야 한다.

소매점은 회수회사에 회수통고에서 알린 모든 제품의 처분과 량에 대해 통고해야 한다. 만약 제품이 제조자가 직접 가져가거나 혹은 파괴하도록 보류되고 있지 않으면 제품을 처분한다. 일반적으로 소매상인이 제품을 반환한 소비자에게 구매한 가격에 대해 반환해 주고 있으며, 보통 제조자가 도매가격을 소매상에게 반환금을 지불한다.

사. 회수된 제품의 처분

회수된 제품은 재가공 등과 같이 위해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이나 폐기에 의해 처분될 수 있다. 만약 롯데가 적거나 명백한 건강위해가 존재한다면 제품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재가공은 잠재적인 위해가 제거될 수 있다면 고려될 수 있다.

재가공, 위해성분의 분리, 또는 완전히 오염원을 제거하는 다른 조작등의 방법은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제품을 재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재작업이 가능하다면 회사는 제품이 어떻게 재작업되는지, 재작업이 어떻게 제품을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는 것을 진술하는 계획을 만들어 해당 지방회수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의논하도록 한다.

재작업이 가능하지 않거나 해당 지방회수담당관이 재작업 계획을 거부한다면 제품은 폐기되어야 한다. 해당롯데의 제품은 땅에 매립하거나 태워서 폐기함으로써 다시는 사용될 수 없게 한다. 해당 정부기관의 매립과 독성물질의 처분에 대한 규정에 일치하도록 위해제품을 폐기할 때 매우 주의를 해야 한다. 모든 제품은 폐기되어야 하며 회사는 모든 제품을 설명하며 제품의 파괴를 입증하는 기록을 가져야 한다.

아. 회수의 종료

회수전략에 따라 제품을 제거하고 정정하

는데 모든 필요한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회사가 결정하면 회수는 종료되어야 한다. 회사는 회수완료후 회수결과를 양식에 따라 회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회수담당관에게 보고한다. 회사의 회수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방회수담당관이 판단하여 재회수를 명령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재차 회수하여야 한다.

제품회수가 종료된 후 회수전담팀은 회수절차에 대한 효과와 회수결과를 분석하고, 매니저는 회수팀에 결합제품을 처분하는데 비밀관성, 부적합성, 혹은 소홀했던 점에 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모든 결합제품을 되찾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유통기록과 함께 되돌아오는 확인통고를 비교해야 한다. 회수팀은 회수시행전반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고 이후의 회수에 대하여 권고한다.

자. 회수공표와 언론관계전략

의심되는 혹은 실제적인 위해와 관련된 불리한 언론공표는 회사의 명예와 판매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중관계에 책임있는 회사내의 개개인들은 언론과 접촉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러한 개인들은 미리 알려져야 하며 회수팀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도록 한다. 되도록이면 공장의 매니저와 작업담당자는 언론으로부터 질문에 대답해서는 안된다.

명백하고 실제적인 진술이 언론에 대해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이 진술은 준비된 시기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진술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1) 회사를 밝힌다.
- 2) 회사의 연락처와 전화번호를 밝힌다.
- 3) 날짜
- 4) 취해진 조치-대중통보, 자진회수 혹은 강제회수
- 5) 발병등 위해상황의 보고
- 6) 제품에 대한 설명 : 상표이름, 제품이름, 포장의 묘사와 크기, 롯데, 코드
- 7) 제품의 문제성질을 밝힌다.
- 8) 제품취급에 대한 지시사항을 내린다.
- 9) 반환이 가능한지를 밝힌다.

4. 회수제도 도입에 대비한 식품업체의 각 부서별 관리사항

가. 생산부문에서의 관리사항

1) 품질관리

자사제품의 회수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라인에서의 품질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원재료의 선택과 검수에서부터 제조공정중의 각 단계에서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각 생산부문에서는 각 제조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회수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위해발생요소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HACCP)의 위생관리방식등을 적용하여 식품의 제조공정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각 식품제조업소는 자사제품의 회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연계하여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새로운 공정관리방식을 자사제품의 공정관리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회수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식품제조업체는 제조공정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자사제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의 과학적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은 회수상황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록관리

원료에서 제품까지의 제조기록을 포함한 모든 제조공정의 철저한 기록은 회수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위해상황을 분석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원료에서 제품이 만들어 질 때까지 제조기록을 잘 유지하는 것은 회수를 시행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회수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제품의 제조번호나 롯트번호등의 인식이 제품을 추적하는데 필요하므로 자사제품의 정확한 롯트와 코드등에 대한 기록관리가 필요하다.

나. 판매부문에서의 관리사항

1) 판매·유통관리

식료품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제조단계에서 보다는 유통단계에서 발생하여 주로 보고되는 피해유형은 변질·부패와 유통기간 경과로 조사되고 있다. 회수책임은 영업자중 위해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브랜드 이름을 관리한다는 면에서 책임한계를 영세한 많은 유통업소에 마냥 떠맡기고만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자사제품을 유통시키는 유통업소를 어느정도 사전에 정비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냉장·냉동식품 등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제품을 취급할 때에는 영세한 유통, 판매업자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전달하여 자사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회수상황 발생시 빠른 시간내에 자사제품을 회수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식품제조업체는 자사제품에 대한 유통망을 사전에 파악하여 회수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의 영세적인 유통구조를 일부 정비하고 자사제품의 유통라인을 어느정도 파악해 놓는 것이 회수상황을 대처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 도매수준의 거래처는 파악하고 있을 것이나 소매수준이나 소비자수준까지 회수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자사제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자로 하여금 각 거래하는 소매단계의 거래처와 거래제품의 이름과 제조번호, 거래량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한다.

2) 냉장·냉동 탐차 관리

냉장·냉동 탐차의 경우에 미국에서는 자동온도기록 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식품의 운송일지도 기록 보존하고 있어 유통중의 식품의 흐름 및 상태파악이 용이하나 우리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회수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자사제품의 냉장·냉동 식품의 유통중 냉장·냉동 탐차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자사제품의 냉장·냉동 유통중의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위해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유통라인 관리

회수상황 발생시에는 빠른 시간내에 자사 제품을 회수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식품제조업체의 판매부서에서는 각각의 자사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유통라인을 파악하여 회수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판매부에서는 대부분 도매수준의 거래처는 파악하고 있을 것이나 소매수준의 거래처는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자사제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자로 하여금 각 거래하는 소매단계의 거래처와 거래제품의 이름과 제조번호, 거래량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 자사제품의 모든 유통라인을 되도록 자세히 파악하여 언제든지 회수상황에 대비한다. 또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무자료거래의 관행을 없애고 정확한 거래자료를 보관하여 회수상황에 대비하도록 한다.

4) 제품기록 관리

회수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수대상제품을 쉽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조일자, 유통기한, 로트번호등을 코드화하고, 이러한 제품에 대한 기록을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POS(Point of Sales System) 이용은 유통 전문업체 중심의 좁은 전산화실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유통, 판매 업체의 전산화가 이루어진다면 회수상황에 대처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다. 관리부문에서의 관리사항

1) 회수전담조직 관리

식품업체는 접수되는 자사제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회수상황을 판단하고 회수상황 발생시에는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회사내 식품회수전담팀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회수전담팀의 팀원들은 회사내에 잔류물질평가, 구매, 생산, 경영, 판매, 유통, 법, 그리고 소비자 관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팀은 회수상황 발생시마다 모였다가 회수상황이 종료되면 해체될 수 있겠다.

회사내 이러한 식품회수전담팀 또는 식품회수전담부서의 구성등 회수상황에 대비

한 조직 및 이를 위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 원재료 품질·기록 관리

식품위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원재료의 올바른 선택과 관리가 중요하며 또한 회수상황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원재료에 대한 기록의 관리이다. 그러므로 원재료와 기타 부재료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에서는 검수시의 시간과 함께 자세한 스펙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록에는 검수시간, 납품업소에 대한 정보, 물품의 자세한 스펙등을 남기며, 회수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검수시의 기록을 식품회수전담부서에 통보하여 위해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참조하도록 한다.

5. 회수제도 도입에 따른 식품업체의 역할과 의지

최근의 국제화·개방화 물결이 우리에게도 밀려 왔고 이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종종 사회문제화되었던 결함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현안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안전과 결함상품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PL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이라 함은 상품의 제조자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보상을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안전성이 결여되거나 위해한 모든 제품에 대해 사고의 예방과 확대방지를 위해 시장에서 제품을 수거하는 회수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자사제품에 대한 품질경영을 하지 않을 수 밖에 없으며, 영업자는 회수제도를 통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제고 및 국내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차후 배상책임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다.

미국의 식품회수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은 식품제조업과 관련업계 또한 소비자의 높은 의식이라고 판단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의 안전의식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식품업계 스스로 위해식품을 회수하여 사전에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진회수와 강제회수를 병행하여 제도를 추진할 것이나 앞으로 본 회수제도가 추구하여야 할 방향은 업계의 자진회수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앞으로 식품제조업계에서는 자사제품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진회수에 임하기를 바란다.

V. 맺 음 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식품행정은 정부가 주도를 하고 식품업계는 정부에서 시행한 것을 따르고 의존하여 왔다. 이제는 식품행정을 포함하는 정부의 모든 행정이 “행정규제 자율화”를 표방하고 있고 이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이제 식품업계는 정부와 법을 의식하기 보다는 소비자를 생각하는 진보적이고 건전한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식품회수제도에 대한 근거법이 없이 단지 지침만을 갖고도 이러한 회수제도를 30년이상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은 식품제조업과 관

련업계 또한 소비자의 높은 의식이라고 단언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기에 이 제도를 정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논란의 소지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행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꾸준히 연구를 하면서 모두 함께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매일 섭취하고 있는 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으로 식품제조업과 식품유통업에 관여하는 모든 사업자, 경영자, 종사자들의 의식이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과 소비자의 높은 식품안전의식에 따라 전환되어야 한다.

본 식품회수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성공여부는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위해식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없이는 식품회수제도는 무의미한 하나의 제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순수한 의미의 식품자진회수제도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아무쪼록 금번에 도입된 식품회수제도가 우리나라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초석이 되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고, 식품업계 스스로가 자발적인 의식을 갖고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본 제도가 우리나라에 무리없이 서서히 정착되기를 바란다.